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(제2차 교육위원회) 2017. 12. 1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광주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-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-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O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1일

O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○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6조(지도·감독 등) 제2항의 개정으로,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됨에 따라,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,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O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
 - 초등학생: 05:00부터 22:00까지 (기존 23:00에서 1시간 단축)
 - 중 학 생: 05:00부터 23:00까지 (변동사항 없음)
 - 고등학생: 05:00부터 24:00까지 (변동사항 없음)
 - 초등학생: 05:00부터 22:00까지 (변동사항 없음)
-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함.

5. 검토의견

- O 본 조례 개정안은 충북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야간교습 허용 시간을 1시간 단축 하는 것으로,
-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「학원, 교습소 등의 교습시간 제한」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생·학부모·교직원·학교운영위원 및 학원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가선행되었고,
- O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충북지회 및 학원업무담당 공 무원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